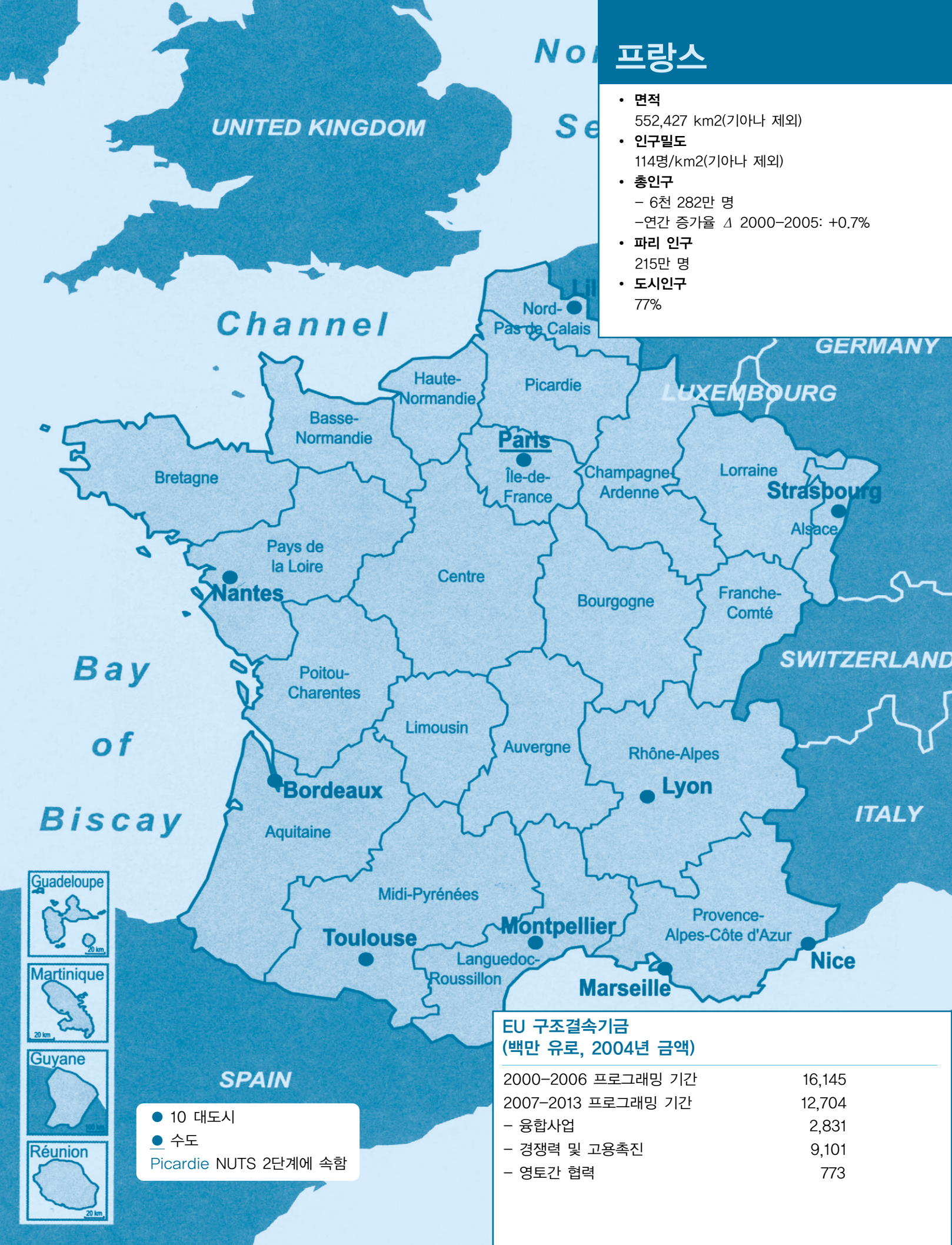


프랑스 >>>





일반자료

■ 국가 조직

- 단일국가. 1958년 10월 4일 통과된 헌법 제 72조에 지방정부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2003년 3월 28일의 개헌에서 “공화국의 지방분권 조직”으로 강화되었다.
- 프랑스는 2007년 1월 17일 유럽지방자치헌장을 비준하였다.
- 준내각제와 준대통령제의 의원집정공화국:
 - 양원제 의회 : 하원(5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됨)과 상원(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보통선거로 선출됨). *선거인단 (grands electeurs): 의원, 행정시군 및 도의원, 그리고 시장을 포함한 시의원 대표로 구성됨. 최근의 선거는 2007년 6월에 있었다.
 - 프랑스공화국의 대통령은 5년 임기로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최근의 선거는 2007년 5월에 있었다.
 - 수상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며(www.premier-ministre.gouv.fr) 내각은 내무부와 해외영토 및 지방정부(www.interieur.gouv.fr)를 포함 15명의 장관 (2007년 6월 현재)으로 구성된다.

■ 영토 단계의 제도적 조직

프랑스는 EU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국가로서 인구는 독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프랑스는 수도권역과 해외영토 모두 보유한다. 중앙국가 영토행정은 3단계로 편성된다. 즉, 26개 지역 행정구역(regional prefecture), 100개 시군 행정구역(departmental prefecture)에다, 시군 행정구역은 다시 339개의 구(arrondissements)로 나뉜다. 도지사(Prefect)는 지역(prefet de region) 및 시군(prefet de departement)의 각 행정구역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프랑스는 지방정부의 3계층으로 구분된다. 즉, 36,683개 기초자치단체(코뮌 : communes), 100개 중간자치단체(데парта트망: departements), 그리고 26개 광역자치단체(레지옹 : regions)이다. 이 중에서 코르시카섬(CTC)은 법적으로 특수한 지역정부의 지위를 보유하며, 수도 파리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데парта트망이기도 하다.

해외영토의 지방 계층은 자치권의 범위가 다양하다. 프랑스는 4곳의 해외 데парта트망 및 4곳의 해외 레지옹(DOM-ROM), 6곳의 해외영토(TOM),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독특한 지방정부 및 해외영토 각각 한 곳을 보유한다.

국가영도행정

26개 지역 행정구 (circonscriptions regionales)
100개 시군 행정구 (circonscriptions departementales)
339개 구 행정구 (arrondissements)

지방정부¹⁾

26개 광역자치단체(레지옹) (regions)
100개 중간자치단체(데парта트망) (departements)
36,683개 기초자치단체(코뮌) (communes)

■ 지방 정부 협회

- 프랑스는 지방정부 각 단계별로 계층별 연합체가 존재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프랑스 광역단체연합(Association des Regions de France- ARF) : www.arf.asso.fr;
 - 프랑스 중간자치단체연합(Assemblee des Departements de France- ADF) : www.departement.org;
 - 프랑스 시장연합(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AMF): www.amf.asso.fr.

이와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숫자가 워낙 많고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연합단체가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프랑스 대도시 시장연합(Association des

Maires des Grandes Villes de France- AMG VF), 중소도시 시장연맹(Federation des Maires des Villes Moyennes- FMVM), 프랑스 소도시 연합(Association des Petites Villes de France- APVF), 프랑스 농촌시장연합(Association des Maires Ruraux de France- AMRF), 그리고 산간 및 관광지 기초자치단체 재편연합 등이 있다.

일부 연합단체는 프랑스 지역사회 연합(Assemblee des Communautes de France - AdCF), 프랑스 도시 기초지자체연합(Association des Communautes urbaines de France- ACUF)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체를 대표하는 것도 있다.

* 거시경제자료(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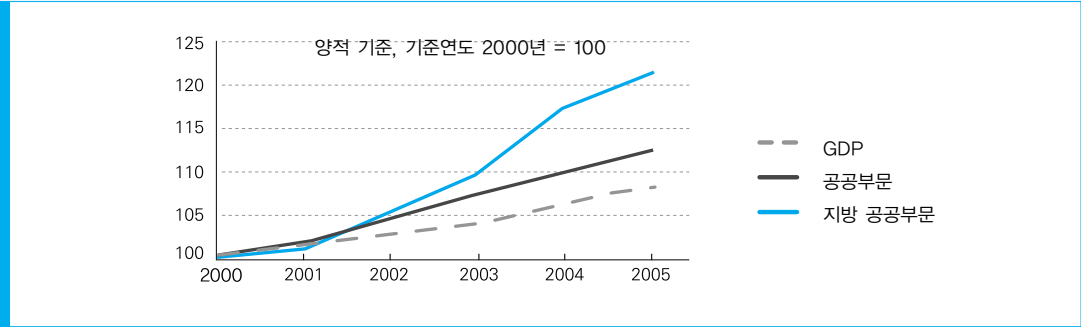
	프랑스	EU 27개국	EU 27개국 중 순위
GDP			내림차순
백만 유로	1,717,921	10,990,743	3위
1인당(유로)	27,348	22,344	10위
2004-2005 변화	+1.7%	+1.8%	22위
기타 지표			오름차순
실업률(%)	9.7	8.7	23위
인플레이션 비율(%)	1.9	2.3	6위
통화	2005 환율	유로화 채택	
Euro	-	2002년 1월 1일	

* 주요 재정지표(2005년)

	백만 유로	GDP %	공공부문 %	12000-2005*
지출				
공공부문	921,996	53.7	-	+2.4%
지방 공공부문	187,762	10.9	20.4	+4.0%
GFCF				
공공부문	56,883	3.3	-	+3.1%
지방 공공부문	39,470	2.3	69.4	+2.8%
수입				
공공부문	870,510	50.7	-	+1.8%
지방 공공부문	184,442	10.7	21.2	+3.2%
예산수지				
공공부문	- 50,863	-3.0	-	-
지방 공공부문	-3,320	-0.2	-	-
부채				
공공부문	1,136,825	66.2	-	+5.1%
지방 공공부문	120,492	7.0	10.6	+0.5%

*양적 기준 연평균 성장

* 2000 - 2005 공공지출 변화



1.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광역도시, 해외 데парта트망 및 레지옹(DOM-ROM) 관련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그 외 해외영토는 광범위한 자주법을 보유하므로 연구에서 제외한다.

EU 구조결속기금

■ 2000-2006년 프로그래밍 기간

프랑스는 EU 기금에서 1인당 257 유로(2004년 금액)에 해당하는 161억 4천만 유로를 배정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목표 2(Objective 2)에, 약 1/3은 목표 3(Objective)에 나누어 썼다. 4개 DOM-ROM(해외영토), 코르시카 및 노르 파 드 칼레(Nord-Pas-de-Calais) 지역 일부가 목표 1(Objective 1)에 의거, 전체 중 18%를 수령했다. 2006년 말에 프랑스는 EU 15개국 평균인 68%대비 65%의 흡수율을 기록했다.

■ 2007-2012년 프로그래밍 기간

프랑스의 전략기준체계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목표를 선정했다.

- 기업, 혁신, 연구, 특히 SME의 지원;
- 훈련, 고용 및 사회적 포용;
- 환경, 위험예방 및 에너지정책;
-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는 EU 기금에서 1인당 202 유로에 상당하는 127억 유로를 배정받음으로써, 2000-2006년 기간과 비교하면 약 20% 정도가 감소했다. 기금액수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프랑스 GDP의 0.11%에 해당한다(2004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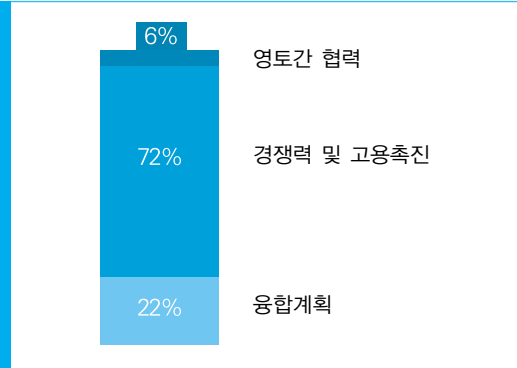
투자와 고용(혁신, 지식, 경제, IT, 기업, 환경과 에너지, 대체교통)에 있어서 지역의 매력과 우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지역경쟁력 및 고용증대 계획(72%)에 따라 모든 지역에 재정지원혜택이 시행되었다. 기금 중 22%는 최고변방지역 전용기금인 융합계획(해외 데парта르트망과 레지옹)에 의거하여 프랑스에 배정되었다. 나머지 6%는 전역 영토간 협력계획에 책정됐다.

프랑스는 이 기금을 36개의 운영프로그램(OP)에 따라 사용한다. 즉,

- 26개 지역 OP(레지옹 1곳 1 OP), 산간지방 및 수로지역에 대해 4개 복합지역 OP, 그리고 기술지원 OP 1개소;
- 국가 OP 1개, ESF 하에서 DOM-ROM에 대해 4개 OP.

OP의 시행은 국가영토계획정책 및 국가-지역간 프로젝트계약(CPER)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중앙 정부는 토지 계획 및 영토경쟁력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DIACT)이라는 기구를 통해 구조기금 관리책임을 담당한다. 알사스(Alsace) 지방은 실험차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인가 받았다.

* 목표(Objective)별 EU 기금명세



추가 정보

- DIACT: www.diact.gouv.fr 및 www.projectsdeurope.fr

지방조직 현황

1. 지방 정부 단계

프랑스 본토와 DOM-ROM은 26개의 광역자치단체(레지옹 : regions), 100개의 중간자치단체(데парта르트망 : departements), 그리고 36,683개의 기초자치단체(코뮌: communes)로 구성된다.

레지옹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지방단계이다. 1972년 7월 5일의 법으로 공공설립기관의 형태로 처음 도입된 레지옹은 1986년에 분권화된 지방정부로 변신한 후, 2003년 3월 17일의 법에 의하여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레지옹은 인구통계적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광역단체인데, 레지옹의 평균 주민수는 240만 명이지만 일드프랑스(Ile-de-France)는 1천14만 명의 인구의 최대규모 레지옹으로서, 최저인구를 보유한 유럽대륙 레지옹 리무쟁(Limousin)의 16배에 달한다. 또한 특수법령을 보유하는 코르시카 섬 영토정부(Collectivite Territoriale de Corse- CTC)라는 레지옹도 있다.

데парта르트망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창설된 유서 깊은 지방조직이다. 데парта르트망은 지리적 규모에있어서는 비교적 동질성이 있으나, 인구로 따지자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적은 곳(로제르: Lozere)은 가장 많

은 곳(노르 : Nord)의 1/35에 불과하다. 평균 주민수는 약 630,000명이다.

프랑스의 해외 영토조직

프랑스는 해외영토조직을 고찰하면 특히 더 복잡한데, 지방정부가 다양한 자치권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법령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주요 유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해외영토(Territoires d'outre-mer or TOM) : 6개 해외 지방정부(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후투나 제도, 생피에르-에-미끄롱 군도, 마요트 제도, 생마르탱 섬, 생 바르텔레미), 1개 특별지방정부(뉴 칼레도니아) 및 1개 특별법 해외영토(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
- 해외 데парта르트망과 레지옹(Departements et Regions d'outre-mer or DOM-ROM): 이 영토조직은 헌법 제 76조와 2000년 12월 13일의 해외지향법(Overseas Orientation Act)에 의거하여 타 프랑스 광역단체와는 약간 다른 재정지원조건과 포괄적 책무를 맡고 있는 단일 데парта르트망의 레지옹(과델루프, 마르티니크 섬, 레위니옹 섬과 가이아나)을 일컫는다. 이들 지역은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의 제 299.2조에 기초하는 유럽 차원에서 특별법령, 즉 변방지역(Outermost Regions)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본토와 해외 데парта르트망 및 레지옹만을 다루기로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프랑스 혁명 중에 교구, 마을, 읍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것도 있다. 1884년 4월 5일의 기초단체법은 조직, 감독, 책무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2007년 집계에 나타난 36,683개 기초자치단체의 숫자(이 중 36,569개는 프랑스 본토에, 나머지 114개는 DOM-ROM에 소재함)에서 보듯이, 프랑스 한 국가가 EU 총 기초자치단체 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인구 통계학적 측면의 평균 기초단체 규모는 특히 규모가 작아서(1,720명), 절대다수가(95%) 주민수 5,000명 미만인 반면, 100,000명 이상인 곳은 0.1%(37개 기초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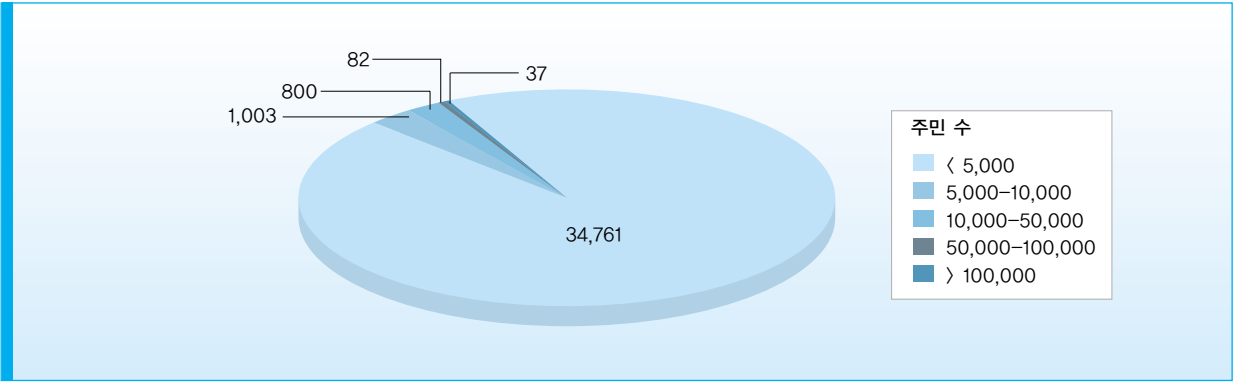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의 다양성과 특히 인구 면에서 극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초단체가 동일한 행정구조와 법적책임을 보유한다.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되

는 곳이 프랑스 대도시(파리, 리옹, 마르에이유)로서, 이들 도시는 특별행정법령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역 시청(mairies d'arrondissement)이라는 명칭의 선출형 지방조직이 허용된다.

파리는 비록 특별법상으로 수도는 아니지만, 코뮌인 동시에 데парта망으로서 꼭 같은 행정경계선(“파리 중심부 : Paris intra muros”라고 불리는 105 km² 면적의 지구)을 보유한다. 파리 도심은 인구 215만의 분포를 나타내며, 파리 광역권(Greater Paris)은 이보다 규모가 더 크다. 파리의 인구는 사용하는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계를 달리한다.

- 520만 명(“핵심구역”: 파리 시를 비롯하여 인근의 76 기초단체 포함);
- 960만 명(“도시구역”: 파리 시 인근의 395개 기초단체를 포함);
- 1천140만 명(“일드프랑스” 레지옹을 모두 포함할 경우).

* 인구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내역(2005년)



1970년대의 합병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가에서 기초단체간 조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이 숫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기초단체의 파편화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현재 약 19,000개의 기초단체간 조직이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인 기초단체가 이양해 준 과제를 관리한다.

위의 숫자 중에서, 영토행정에 관한 1992년 2월 6일의 지향법(Orientation Act)에 의거하여, 기초단체 사이의 매우 “통합”된 조직체인 소위 “자체세수 보유 기초단체간 조직(EPCI afiscalite propre)”이라는 형태가 있다. 이 조직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위와 같은 조직은 2,588개로서, 프랑스 기초자치단체의 91%, 프랑스 인구의 87%를 재편성했다.

이들 조직 중, 이른바 도시연합(Communautes Urbaines)은 프랑스 주요도시와 인근 기초단체 대부분을 한데 묶음으로써 주민수가 620만 명에 달한다. 파리광역권은 아직까지 그러한 기초단체간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2. 지방정부 정치제도

☞ 지방정부 정치기구

광역의회(conseil regional, 코르시카에서는 “영토회의”라 칭함)는 레지옹의 심의기구이다. 2004년 이래 임기 6년의 광역의회 의원은 2차 결선투표방식으로 선출된다. 최근의 선거는 2004년 3월에 치러졌다. 광역의회는 두 종류의 지원체계에서 도움을 받는데, 하나는 전문위원회, 또 하나는 지역경제사회자문위원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 regional- CESR)로서, 후자의 경우 자문능력을 보유하며 기업, 조합 및 자원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광역의회 의장(president)은 의회에서 의원 중에 선출하며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부의장이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은 상임위원회(commission permanente)와 아울러 좀 더 제한적인 형태인 국(bureau)을 대표한다.

중간단체의회(conseil general)는 주(데парта망)의 심의기구이다. 데парта망 의원은 2단계 결선투표방식에 따라 보통, 직접선거로 각 주에서 선출되며, 의원수의 1/2을 매 3년마다 새로 뽑는다. 이 다음의 3년 주기 투표는 2008년에 치러진다. 주 의회에는 또한 의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데парта망 특성적인 부문별 전문위원회가 있다.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데, 의장은 의원들 중에서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부의장 당선자와 함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아울러 보다 제한적 형태인 국(bureau)의 대표자가 된다.

기초단체의회(conseil municipal)는 기초자치단체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심의기구이다. 6년 임기의 기초의회 의원은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되는데, 그 선거 제도는 기초자치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장

(maire)은 기초의회에서 의원 중에 선출되어 집행기구를 이끌어 나간다. 기초의회에서 선출된 부시장이 시장을 보좌한다. 차기 기초의원 선거는 2008년 3월에 치러진다.

☞ 시민의 지방정치활동 참여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지방분권법, 그리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2003년8월 1일의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심의기구인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과반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주민투표 결과를 시행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이 같은 종류의 협상을 직접 시작할 수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의회에서 내린 일체의결정에 대해 등록유권자의 1/5이 발의하는 경우 협상발의안을 심의기구의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그 외의 지방정부 단계에서는 유권자의 1/10이 발의하면 가능). 단, 심의기구에서 이 협상발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프랑스에는 또 지방과 광역단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 지역사회 민주주의에 관한 2002년 2월 27일의 법률에 따라 인구 10,000명 이상의 기초단체, 80,000명 이상 기초단체 지역의회(conseils de quartier)는 지방 공공서비스 협상위원회

(commissions consultatives de services publics locaux)를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정부의 책임

☞ 권한영역

1980년대 초 지방분권법(사회복지, 직업교육, 중등학교) 및 2005년 1월 1일자 발효한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지방분권법(사회복지, 중등학교 비교수 인원, 항만, 공항, 국가도로망 등)에 명시된 책임이양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영역이 확대되었다

국가의 책무(예, 주민등록 서비스 또는 선거인명부 조항)를 수행하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즉, 도시계획, 기초단체 도로망, 도시 대중교통, 교육 및 아동복지시설(유치원, 취학 전 및 초등학교의 신축과 유지보수, 아동 여가시설의 관리), 환경(식수공급, 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문화와 스포츠 등이다.

중간자치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및 공중보건 : 2004년 8월 13일 법에 따라 아동, 가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아동과 가족의

건강보호와 같은 부문의 중간자치단체 임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중간자치단체는 2002년 이후부터 고령자에 대한 신규 사회복지제도 및 2004년 이후부터 최저 사회적포용 소득(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일체에 대한 관리체계(사회적 포용의 선도 및 수당관리, 배분의 책임. 다만 액수와 배분조건은 계속해서 국가단계에서 결정됨)를 맡게 되었다;
- 교육 : 중등학교(colleges)의 신축, 개축, 편의시설 및

운영은 중간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2004년부터는 중등학교 비교수 인원의 급여지급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채용과 관리까지 책임진다. 학교통학 또한 데парта트망의 관할사항이다;
- 영토계획 및 부대시설 : 중간단체는 데парта트망 관내의 도로망, 농촌개발, 해상 및 어로 항만 관리를 담당한다. 2004년 8월 13일 법령에 따라 일부 국가 도로에 대한 임무도 이관받았다.

* 지방분권에 관한 최신정보

1982년과 1983년의 지방분권법은 제 1단계 지방분권화(Acte I de la decentralisation)를 규정한다. 이 법으로 국가 대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이 폐지되고 자유행정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기초단체, 중간단체, 광역단체로 이관하고(교육, 사회복지 등), 행정권도 국가대표자에서 선출직인 중간단체 및 광역단체 의회 대표자로 넘어갔다.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보상 측면을 보면, 국세의 지방정부 이양, 그리고 지방분권 교부금(DGD)이라는 형태를 띤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몇 가지 법령이 추가로 통과되었다(영토 관련 공무원, 기초단체간 협력, 광역 철도교통 또는 고령자 자원과 같은 업무의 이관 또는 신설).

제 2단계 지방분권화(Acte II de la decentralisation)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 단계는 공화국 지방분권조직에 관한 개헌 및 2003년 3월 28일의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가기구조직상 지방정부 단계의 위상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단계의 임무수행을 보장하며, 자체적인 결정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발의를 통해 시민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이러한 헌법적 조치를 발효시키기 위해 3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지방정부 단계

의 재정자주권법, 지방정부 실험법, 지방주민투표법). **입법 후기 단계**는 지방당국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률**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중대한 책임을 새로 이양하는 문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구조, 국가기관의 이전을 다룬다. 이전관련법이 발효된 것은 2005년이나,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자원의 이전도 수 년간에 걸쳐 책임의 이양과 보조를 맞추어 확산될 것이다. 재정수단의 귀속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각 재정법에 규정될 전망이다. 재정보상은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회계수입을 분배하고 보험계약에 붙는 특별세와 석유제품에 붙는 내국세의 일부를 귀속시켜 전달하는 형태를 띤다.

자체세수보유 기초단체간 협력단체 의장을 직접 및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기초단체간 지도를 능률적으로 간소화시키며,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책임내역의 간소화 및 명확화, 또한 영토단계에서 국가서비스의 재편과 같은 지방분권절차의 기능개선안이 이미 협상테이블에 올라 있다.

중간단체는 또한 문화, 국가유산 기념물, 소방업무 및 긴급구호 서비스도 담당한다. 아울러, 중간단체는 기초단체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광역단체는 특히 국가-지역 프로젝트 계약(contrats de projet Etat-region)의 이행을 위한 체계 내에서 도시와 농촌 계획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04년 8월 13일 법은 중등학교(lycees)의 신축 및 유지보수, 비교수 인원의 관리 및 보수지급, 직업훈련을 포함, 교육의 영역에서 지역의 책임을 확인 및 통합하였다. 광역단체는 또한 교통, 즉 하천항만과 수로의 관리, 2002년 이후부터 광역지방의 승객철도 운송, 2006년부터 일드프랑스(Ile-de-France) 운송을 담당한다.

광역단체의 영토에서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프로젝트(5년에 한해 실험적으로 기업에 경제적 보조금 지급, 지역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세심한 노력)와 같은 경제개발 업무도 광역단체의 소관이다.

2004년 8월 13일 법은 또한 희망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유럽구조기금의 관리, 국가책임 하에서 항만의 관리(자치권이 없는 항만, 해상 및 어로 항구), 지방공항, 공중보건시설 재정지원, 공공문화유적 보존 등과 같은 몇몇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치단체는 이 같은 실험 수행에 상응하는 재정수단을 지원받으려면 국가와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2007년 4월 현재, 148개 지방공항과 18개 항만의 관리책임이 기초단체, 기초단체간 협력단체, 중간단체 또는 광역단체로 이관되었다.

⌘ 지방공공서비스 관리

지방공공서비스는 직접관리 또는 위임관리 방식 중 한 가지가 사용된다. 전통적으로는 “공사(regie)”를 통한 직접관리를 선호했다. 공사는 공공서비스관리의 재정 및 회계규정에 따라 지방의 자체수단과 인원을 동원하여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조직 및 관리한다. 위임관리의 경우, 지방정부가 제 3자와 공공서비스 위임계약을 맺는데,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민간관리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계약의 형태는 다양하다.

하도급업체는 민간기업 또는 소위 지방혼합경제기업(societe d'economie mixte locale- SEML)이라는 이름의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私法)법인 및 혼합자본유한회사로서, 여기서 지방정부는 50%에서 85% 사이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2006년에 평균 주식의 65%를 보유한 주주로서, SEML의 다수 주주의 위치에 있다. 현재 추세는 기초단체간, 중간단체간, 그리고 광역단체간 조직의 개입이 늘어나 지방정부의 지분을 상쇄시킴으로써 기초단체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SEML은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주주인 지방정부 책임에 부응하는 영역에만 공공서비스 관리가 국한된다. SEML이 일반적으로 맡은 임무는 지방공공서비스 관리, 산업 또는 주택지구 결성, 사회지원주택 또는 사무실 신축 및 관리, 대중교통 및 주차장, 여가, 관광, 경제개발, 폐기물 관리, 수도 및 에너지 네트워크 등이다. 2006년

집계에 따르면 총 1 130개의 SEML이 등록되었는데, 이중 서비스 부문에서 운영되는 것이 절반을 약간 넘고, 1/4은 개발, 그 나머지는 부동산으로서, 2006년 총 매출액은 138억 유로로 나타났다. SEML에서 고용한 인원은 총 65,500명이다. 관민합작사업 형태의 프로젝트는 “합작계약”(contrats de partenariat) 설립에 관한 2004년 6월의 칙령, 그리고 2005년 5월의 관민합작 지원단(Mission d'appui aux partenariats public-privé- MAPPP)의 창설 이후 특히 지방단계에서 대폭 늘어났다.

⌘ 기초단체간 협력

기초단체는 임무 수행을 위해 자원을 통합하고 공공 기초단체간 협력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구는 해당 조직의 목표 및 적용되는 조세통합을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도입이 가능하다.

기초단체간 신디케이트는 단일목적 또는 다목적, 둘 중 하나의 형태를 띠는데(지금까지, 단일목적은 12,000개, 다목적은 1,500개가 2006년에 등록되어 있음), 징세권한은 없고 회원 기초단체의 분담금에 의해 재정이 지원된다.

“신도시 신디케이트”(2007년 1월 1일 5단체가 등록), “기초단체 연합”(2 400), “타운연합”(169) 및 “도시연합”(14)은 자체조세권을 보유하며, 경우에 따라 네가

지 유형의 지방직접제(아래 참조), 지방사업제 또는 이 두 제도를 혼합한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기초단체 협력기구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며, 도입된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초단체간 신디케이트는 법적 요건상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조직형태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필수 의무를 부과한다. 가장 흔히 위임되는 책임에는 공공서비스 또는 시설관리, 특히 수도공급 및 분배, 생활폐기물 처리, 하수처리시설 및 대중교통이 있다.

4. 지방정부 활동의 통제

기초단체, 중간단체, 광역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1982년 3월 2일 법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법의 선형적 국가행정통제를 폐지시켰다. 지방정부와 그 위성협력조직에 대한 법률 및 예산 통제는 헌법 제 72조에 명시되어 있다.

⌘ 법적 통제

법적 통제는 귀납적으로 실행하므로 기회측면은 포

2. 중간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회 또한 정도는 달하지만 중간단체간 조직기구 또는 광역단체간 협약을 통해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혼합형 신디케이트가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 중간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간 협력기구 및 영사조직(주로 수도공급 및 폐기물 관리)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형태를 띤다.

합하지 않는다. 도지사(prefect)가 법적 통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며, 필요 시 행정재판관을 참여시킨다(법률을 취소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재판관뿐이다). 2006년 이래 법적으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전 자식 법률전달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법적 통제의 전자문서화).

☞ 예산 및 재정통제

지방정부 및 그 협력조직의 예산법에 한해서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이에 관해서는 일반지방정부코드

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도지사는 광역감사실(Chambre Regionale des Comptes- CRC), 즉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국가행정기구와 연계하여 사후처리 방식으로 예산 및 재정통제를 수행한다. 이들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규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기 규정의 핵심요점은 네 가지이다. 즉, 잠정예산에 대한 표결 및 전송 날짜, 예산의 실물잔고, 행정계정 및 그 잔고에 대한 표결 날짜, 의무지출 예산의 등록이다. 불이행 사안이 발견될 경우, 도지사는 CRC에 의뢰하여 개입 및 구제조치의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1979년 설립된 지방재정위원회(Comite des finances locales - CFL)는 11인의 국가 대표, 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64인의 선출직 대표로 구성된 형평화 조직이다. 지방재정위원회는 의사결정과 통제기구(주요 국가 재정정보조금을 지방정부로 재분배)이자, 협의기구(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며 대화와 제안의 발기인(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개혁관련 논의에 참여)이다. 이 위원회는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정부, 지방재정감시기구(Local Finance Observatory)의 주요한 쟁점들을 되돌아보는데, 재정법 검토로 지방정부대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 법 또한 위원회 내에 **비용평가 협상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sur revaluation des charges - CCEQ)라는 명칭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핵심임무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책임이양에 따른 재정보상을 통제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공공재정 전국회의를 개설했는데, 이는 공공지출에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일년에 한 번 전부 집결하는 행사로서, 여기에는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2007년 7월에는 “**행정위원 전국회의**”(Conference Nationale des Executifs - CNE)도 개최하여 국가와 지방단계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공공통치관리의 개선도 도모하였다.

II 지방공공부문 지출

● 프랑스 지방공공부문³의 결합지출은 2005년에 1천878억 유로, 1인당 3,000 유로를 나타냈다. 이수치는 GDP의 10.9 %, 총 공공지출의 20.4%에 상당했다.

지방공공부문 내에서 2005년에 기초단체, 중간단체, 광역단체의 결합지출은 자체세원 세수⁴의 EPCI와 합쳐서 1천630억 유로를 나타냈다. 지방정부 경상지출은 인건비 24%를 포함, 총지출의

71%를 차지한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의 29%를 나타냈다. 기초단체와 중간단체 내역을 보면, 양 단체 지출의 3/4는 경상지출, 나머지 1/4은 자본지출에 들어갔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상지출이 58%인데 비해 자본지출이 42%로서, 자본지출의 비중이 컸다.

인건비는 기초단체의 최대 지출항목으로서, 경상지출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에 종사하는 인

✱ 지방정부 지출(2005년)

	기초단체		중간단체 ⁵		광역단체		합계 ⁶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경상지출	55,663	72.8	38,024	76.3	10,461	57.9	116,579	71.5
– 이종인건비	27,819	36.4	6,371	12.8	619	3.4	38,407	23.6
자본지출	20,775	27.2	11,839	23.7	7,619	42.1	46,502	28.5
합계	76,337	100.00	49,863	100.00	18,080	100.0	163,071	100.0

기초단체와 자체세원 세수 보유 EPCI 사이의 자금흐름을 포함하는 부분적 결합자료임 – 출처: DGCL, DGCP, Dexia.

3. Eurostat에 의하면, 지방공공부문(S1313)은 지방정부(광역단체, 중간단체, 기초단체), 기초단체간 협력기구, 아울러 지방공공조직, 영사단체, 교육기관, 사회복지센터, 일드프랑스 공공운송조합 등과 같은 여러 지방행정조직을 포함한다.

4. 기초단체와 자체세원 세수보유 EPCI 사이의 밀접한 재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EPCI의 예산은 본 연구의 뒷부분에 포함시켰다. 2005년 현재 이러한 종류 2 524개 협력조직이 계상되었다.

5. 파리 제외.

6. 자체세원의 세수를 보유한 EPCI의 회계자료는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원 수는 2005년에 110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총 지방 노동력(기초단체간 협력조직 포함 150만 명)의 73%에 상당했다. 바로 뒤를 이어 중간단체가 200,000명을 고용한 반면, 광역단체는 총 지방노동력의 1%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들 수치는 광역단체와 중간단체 모두 분권화 제 2단계, 특히 교육 및 영토 기반시설 부문(약 120,000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음)과 관련된 인원이양에 따라 앞으로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기능별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백만 유로	%
일반공공서비스	35,960	19.2
교육	30,320	16.2
사회보호	29,710	15.8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28,510	15.2
경제업무	24,520	13.1
여가, 문화 및 종교	19,100	10.2
환경보호	12,960	6.9
공공질서 및 안전	5,290	2.8
보건	1,110	0.6
방위	0	0.0
합계	187,470	100.0

* COFOG 분류에 근거함 - 출처: Eurostat.

경제기능별 지출을 분석하면, 2005년 지방공공부문은 일반공공서비스에 예산의 약 1/5(19%)을, 바로 다음 순으로는 교육 및 사회보호 지출(16%), 주택 및 지

역사회 부대시설(15%)에 썼다. 총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11%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자본지출 항목 중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에 들어간 돈이 지출의 약 1/3에 달했고, 학교, 대학, 중등학교 신축 및 개축 지출은 19%를 약간 상회했다. 지방정부는 자본지출의 13.5%를 여가시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건설에, 8%는 환경보호, 특히 하수처리시설을 유럽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비용지원에 사용했다.

III 지방공공부문 수입(차입 제외)

● 지방공공부문의 차입을 제외한 결합수입은 2005년에 전체적으로 1천844억 유로에 달하였다.

지방부문 내에서, 지방정부 수입(자체세원의 세수가 있는 EPCI 포함)은 2005년에 1천620억 유로를 기록했다.

자체세원 세수와 공통세수를 합쳐서 수입의 절반 이상에 달한 반면, 교부금이 1/3을 차지했다. 나머지(총수입의 13%)는 요금, 자산관리 및 임시수입에서 들어왔다.

기초단체와 중간단체의 수입은 대부분 세수에서 들어온 반면(기초단체의 52%, 중간단체의 63%), 광역단체 수입의 56%는 교부금이 차지했다.

1. 조세수입

프랑스 지방정부의 2005년 조세수입은 860억 유로로서 차입을 제외한 지방수입의 53%를

* 지방정부 수입(2005년)

	기초단체		중간단체 ⁷		광역단체		합계 ⁸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조세수입	39,503	52.0	30,926	63.2	6,664	38.1	85,537	52.9
-이 중 자체세수	39,503	52.0	25,247	51.6	6,025	34.5	78,958	48.8
-이 중 공통세수	-	-	5,679	11.6	639	3.7	6,579	4.1
교부금	23,903	31.5	13,785	28.2	9,763	55.9	54,850	33.9
-이 중 운영교부금	16,854	22.2	11,530	23.6	8,341	47.7	42,584	26.3
-이 중 투자교부금	7,049	9.3	2,255	4.6	1,423	9.1	12,267	7.6
기타 수입	12,569	16.5	4,223	8.6	1,043	6.0	21,291	13.2
합계	75,975	100.0	48,934	100.0	17,470	100.0	161,678	100.0

기초단체와 자체세원 세수 보유 EPCI 사이의 자금흐름을 포함한 부분적 결합자료임 - 출처 : DGCL, DGCP, Dexia.

7. 파리 제외.
8. 참고 : 자체세원 세수의 EPCI를 포함함.

차지한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은 자체세원의 세금에서 들어온다. 2005년에 도입된 공통세원 수입은 현재 지방정부 세수의 8%, 총수입의 4%를 점유한다.

⌘ 자체세원 세수

자체세원 세수는 기본적으로 흔히 “오랜 4총사”(les quatre vieilles)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4대 지방직접세에서 징수한다. 이들 세금은 3대 지방정부 단계와 일부 기초단체간 협력조직에서 부과하는데, 다만 2001년부터 징수를 중단한 주민세는 제외된다. 프랑스의 지방조세제도는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동일기준으로 적용되는 4대 세금에 대한 세율을 표결함으로써 지방납세자에게 부과될 전체 세율을 결정하는 일종의 비율산정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4대 직접세에서 2005년에 조성한 액수는 570억 유로로서, 지방 자체세원 세수의 약 3/4에 해당한다. 내역을 살펴보면,
-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영업세(taxe professionnelle- 2005년에 252억 유로)는 비록 국가에 의한 조정대상이 되고 기업의 부가세와 연동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정자산(구조물, 건물, 토지, 설비)의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건물분 재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baties- 2005년에 176억 유로)는 부동산 소유자(기업 및 개

인)가 납부한다;
- 주민세(taxe d’ habitation- 2005년에 176억 유로)는 주거용 건물의 주민이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주민세는 국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가계소득과 연동된다.
- 토지분 재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non baties- 2005년에 9억 유로) 역시 부동산 소유자(기업 및 개인)가 납부한다.

1981년 발효한 1980년 1월 10일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상기 세금에 대한 조세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세율 상한 도입 및 타 세금 세율인상과 연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제약사항이 포함된다. 세금관리(산정 및 징수)는 국가 업무로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기타 자체세원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부과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 양도세(2005년에 87억 유로) : 중간단체 또는 기초단체가 징수;
- 교통분담금(2005년에 약 50억 유로) : 회사 급여명부를 기준으로 기초단체 또는 광역권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기초단체간 협력조직에서 징수;
- 생활폐기물 처리세(taxed ‘enlèvement des ordures menageres- TEOM, 2005년에 43억 유로): 기초단체 또는 기초단체간 협력조직에서 징수;
- 자동차등록세(2005년에 16억 유로): 운전면허세와 함께 광역단체가 징수;
- 전기세(2005년에 14억 유로): 기초단체와 중간단체

가 징수;
- 도시계획세(2005년에 10억 유로): 지방정부 모두 징수.

DOM-ROM에서는 예를 들어, 부두설비 사용료(octroi de mer)와 같은 기타 특수 지방세가 있다. 광역의회가 이 간접세의 세율을 정하는데, 수입과 지방생산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부두설비 사용료는 해외 지방정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세원으로서, 2005년에 광역단체 세수의 25% ~ 42%, 기초단체 세수의 39% ~ 52%를 차지했다.

⌘ 공통세원 세수

국세의 일정 몫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세수는 2004년 8월 13일 지방분권법에 규정된 책임이양 보상을 위해,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자주권 통합의 목적으로 2005년에 광역단체와 중간단체로 넘어갔다:
- 광역단체는 2005년 이래 석유제품 내국세(taxe interieure sur les produits petroliers- TIPP)의 일부(2005년에 4억4천1백만 유로)와 견습세 부가세(2005년에 1억9천8백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었다. 이들 공통세가 이미 광역단체 세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 중간단체는 또한 2005년 이래 TIPP의 일정 몫(2005년 47억 유로)과 보험계약 특별세(taxe speciale sur les conventions d’ assurances- TSCA) 중 일부(9억7천

1백만 유로)를 수령하는 중이다. 모두 합쳐서 공통세수는 중간단체 세수의 18%에 해당한다; 비록 소액이긴 하나 TIPP 세율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곳은 광역단체뿐이다.

2. 교부금

지방정부는 1999년 설립된 성장 및 연대협약(contrat de croissance et de solidarite)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교부금과 투자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초기엔 3년 기한으로, 다음에는 암묵적으로 매년 갱신하도록 서명된 이 협약은 주요 국가이전수지가 인플레이션 및 양적 기준 GDP 성장의 몫과 전체적으로 연동된다고 명시한다⁹. 운영교부금이 총 교부금 액수의 78%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운영교부금

운영교부금 중 가장 큰 부분은 포괄운영교부금(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 DGF)인데, 2005년에 370억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서 총 운영교부금의 87%에 달했다. 이 액수는 사실은 2004년 재정법 도입에 따라 교부금을 두 배로 증액시킨 법개정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질적인 교부금 및 세금보상 종류를 모두 DGF 한가지로 통합함으

9. 예비 2008 재정법은 성장 및 연대협약을 안정협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년부터는 주요 국가이전수지가 인플레이션 한 가지에만 연동될 예정이다.

로써 운영교부금 구조를 간소화시켰다. 2004년 개정에서 또 한가지 도입된 것이 광역의회 지분이다. 모든 지방정부 단계(자체세원의 세수를 보유한 기초단체간 협력조직도 포함)는 이로써 DGF를 수령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몫은 기초단체(42%)로 가고, 그 뒤를 이어 중간단체(29%), 협력조직(16%), 끝으로 광역단체(13%)의 순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2004 개정 시 포괄운영교부금의 형평화 기능에 대한 검토도 병행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정부 단계에서 향후 수령하게 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정교부금(DGF forfaitaire). 기초단체에 배정되는 고정 교부금은 무엇보다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다;
- 형평화 지분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당국에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기초단체에 도시 또는 농촌 연대 교부금(dotation de solidarite urbaine - DSU 및 dotation de solidarite rurale - DSR)과 더불어 국가 형평화 교부금(dotation nationale de perequation - DNP)을 지급한다. 2005 재정법은 중간단체에 대해 도시 형평화 교부금(dotation de perequation urbaine - DPU)과 최저 운영교부금(dotation de fonctionnement minimale - DFM)의 신설을 명문화했다.

DGF외에도 운영교부금이 몇 가지 더 있다. 구체적으로,
- 일반 지방분권 교부금(dotation generale de

decentralisation - DGD)은 지방분권화 과정의 초기 최초책임이양 시 생긴 교부금으로서, 2004년 개정으로 95%가 이미 DGF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잔액에 불과하다. 일반 지방분권 교부금은 2005년에 11억 유로를 조금 상회한다;
- 직업훈련 교부금(DGD formation professionnelle)은 직업훈련 및 교육 업무 이관에 따른 보상으로, 광역단체에 배정되는 교부금이다(2005년 18억 유로).

⌘ 자본지출 교부금

자본지출 교부금 중 가장 큰 몫(2005년 38억 유로)은 지방정부의 자본지출에 대해 지급한 부가세를 지방정부에 환급해주는 VAT 보상기금(fonds de compensation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ee- FCTVA)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교부금이 있다. 즉, 각료 보조금(약 20억 유로), 기초단체의 특정범주 및 전체 중간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설비교부금(dotation globale d'equipement- DGE)(약 10억 유로), 농촌개발교부금(dotation de developpement rural - DDR), 1980년대 중반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책임이양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단체에 지급되는 광역단체 학교기자재 교부금(dotation regionale d'equipement scolaire - DRES)과 중간단체에 지급되는 중간단체 대학기자재 교부금(dotation departementale d'equipement des

* 지방정부 세수 및 교부금(2005년) 요약

기초자치단체 - 자체세원 세수가 기초단체 수입의 52%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서 기초단체 세수의 주요 몫으로는, “오랜 4총사(지방직접세 4종류)”, TEOM(생활폐기물 처리세), 교통분담금, 부동산거래 양도세, 전기세, 도시계획세가 있다; - 교부금(기초단체 수입의 31 %)을 구성하는 요소는 운영교부금(DGF 및 DGD)과 자본지출 교부금(FCTVA, 프로젝트 및 기초단체 특성을 근거로 한 제반 보조금 및 교부금: DGE, DDR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8%가 조세수입이다. 이 중 90%는 자체세원 세금 (“오랜 4총사(지방직접세 4종류)” 중에서 세 가지, 자동차 등록세 및 운전면허세), 나머지 10%는 공통세원(TIPP, 견습세 부가세); - 수입의 56%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재정의 주요부분을 차지한다. 교부금의 구성요소는 운영교부금(DGF, DGD 및 DGD 직업훈련)과 자본지출 교부금(FCTVA, DRES, 제반 보조금)이 있다.
중간자치단체 - 수입의 63%가 조세수입이다. 이 중 82%는 자체세원의 세금에서 들어온다. 즉 “오랜 4총사(지방직접세 4종류)”, 부동산거래 양도세, 전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위의 두 세금은 2006년에 폐지됨); 나머지 18%는 2005년 이래 공통세원(TIPP, TSCA)에서 들어온 수입이다; - 교부금(중간단체 수입의 28%)을 구성하는 요소는 운영교부금(DGF 및 DGD)과 자본지출 교부금(FCTVA, DGE, DDEC, 기타 보조금)이다.	

colleges - DDEC)(위의 두 가지를 합쳐서 2005년에 약 10억 유로)이다.

3. 기타 수입

수수료 수입은 대부분 최종소비자에게 상품과 서

비스 판매 시 발생된다. 2005, 2006년의 법령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이 완전히 자율화되었다. 지방정부는 또한 부동산, 토지와 같은 자산에서도 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들 수입을 모두 합쳐서 2005년에 210억 유로에 달했다. 이 중 3/4은 기초단체(59%) 및 기초단체 협력조직(17%)으로 배정되었다.

IV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차입

- 프랑스 지방정부는 1982년 이래 은행대출 및 채권발행에 대해 유연한 법률체계를 운영해 왔다.
- 귀속시켜야 하며, 이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지방정부 신용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차입은 오직 자본지출의 비용을 대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장기부채는 운영지출의 적자를 부담하기 위해 서든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금지된다(부채관리활동은 제외).

차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결정할 수 있다.

- 차입결정에 대한 사후의 법적 통제;
- 기초단체예산에 부채상환을 의무지출로 기록하는 한편, 균형예산 규정준수 보장을 위해 광역단체 감사실과 협조로 도지사가 예산통제.

지방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금 융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차입형태를 이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차입은 확고부동한 반면에, 일체의 국고여유금(극소 수의 예외는 제외)은 정부세무서(Public Tax Office)에

프랑스의 지방공공부문 미불채무는 2005년에 1천205 억 유로(1인당 1 918 유로), GDP의 7%로서, 유럽평균 (5.8%) 보다 약간 높고, 총 공공부채의 10.6%에 해당 한다. 이 중 지방정부 부채는 930억 유로를 나타냈는 데, 세분해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55%, 중간자치단체 가 21%, 그리고 나머지 12%가 광역자치단체를 차지 한다.